임시조직운영지침

제정 2015. 3. 24.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인터넷진흥원(이하 "진흥원"이라 한다) 직제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른 한 시적 조직의 구성·운영·해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시적 조직의 효율적 인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임시조직"이라 함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.
- 2. "조직관리부서"라 함은 진흥원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3. "조직관리부서장"이라 함은 진흥원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.
- 제3조(적용범위) 이 지침은 진흥원의 임시조직 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정 및 규칙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장 임시조직의 구성 및 운영

- 제4조(임시조직의 구성) ①임시조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조직을 신설할수 있다.
 - 1. 한시적으로 특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
 - 2. 전문적·기술적·관리적 사항에 대한 별도자문을 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
 - 3. 「직제규정」 및 「직제규칙」상의 조직에 의해 사업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
 - 4. 조직의 혁신성 제고, 전문분야 멘토-멘티를 통한 실무능력 향상 등 기관의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성이 있는 경우
 - 5.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 - ②임시조직의 존속기간은 1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존속기간을 1년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.
- **제5조(설치장소)** 임시조직은 진흥원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임시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직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 별도의 장소에 둘 수 있다.
- 제6조(구성절차) ①제4조 제1항에 따라 임시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부서장은

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임시조직 구성·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조직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명칭
- 2. 구성 필요성
- 3. 운영 기간 및 장소
- 4. 인력규모
- 5. 분야별 주요역할 및 책임
- 6. 기타 조직관리부서장이 요청하는 자료
- ②조직관리부서장은 제1항의 임시조직 구성·운용계획서의 적정성 및 인력 운용의 효율성 등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, 심의결과 문제가 없는 경우 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임시조직 구성을 요청한 소속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제2항에 따라 임시조직의 구성을 통보받은 소속부서장은 임시조직 구성·운용계획서를 사전에 공개하고, 임시조직 구성·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.
- **제7조(구성원의 직무)** ①임시조직의 구성목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시조직의 장을 둘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임시조직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- 1. 임시조직에 근무하는 직원 개인별 업무분장 시행
 - 2. 업무분장에 따른 목표 및 진도관리
 - 3. 소속부서 장에게 업무 현황의 보고
 - 4. 기타 임시조직 관리에 필요한 사항
 - ② 임시조직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.
 - 1. 임시조직 운용계획에 따른 업무수행
 - 2. 임시조직 장에게 업무 현황의 보고
 - 3.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
- 제8조(직무권한의 위임) 직무권한의 위임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홍원의 위임 전결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9조(구성·운영 예산) 임시조직의 구성·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진흥원 예산 범위 내에서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- 제10조(임시조직 및 구성원의 평가) 임시조직 및 구성원의 성과평가에 관하여서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흥원의 성과평가규칙에 따른다.

제3장 임시조직의 해산

제11조(해산 등) ①임시조직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산한다.

- 1. 사업목표 달성
- 2. 법령개정 또는 정책결정에 따른 사업목표 상실
- 3. 임시조직 존속기간의 종료
- 4. 사업추진실적이 없거나 경미하여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
- 5. 기타 경영 정책상 필요한 경우
- ②제1항에 따라 임시조직의 해산을 통보 받은 소속부서장은 임시조직 해산에 필요한 조치사항을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.
- ③제1항에 따라 해산하는 임시조직의 구성원은 임시조직에 편입되기 이전 부서로 복귀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임시조직 운영기간 동안 이전 부서가 변경 또는 폐지된 때에는 직원의 능력을 참작하여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다.

부 칙<2015. 3. 24>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경영기획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지침 제정 당시 존재하는 임시조직의 구성은 이 지침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.